

목 차

주민자치회장 인사말

01	동(洞) 일반현황입니다.	1
02	주민자치회 조직도입니다.	2
03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3
04	2024년 주민자치회 걸어온 길 입니다.	4
05	주민자치회 회의는 이렇게 합니다.	5
06	2024년도 예산 및 사업 총괄표입니다.	6
07	2024년 응암2동, 동(洞) 지역사업 – 주민자치회 사업 참 잘했습니다.	7
08	(은평구)2024년 주민자치회 연합 워크숍 – 정말 좋았습니다.	16
09	(응암2동) 2024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7
10	(은평구) 2024년 주민자치회 합동 성과공유회 – 우리 함께 했습니다.	18
11	2024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제1기 위원 송별식, 송년행사 -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9
12	자치회관 프로그램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
13	제6회 주민총회 – 최고의 주민 참여마당이었습니다.	22
14	제13회 매바위마을문화축제 – 주민 화합의 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24
15	만남, 나눔의 시간 –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25
16	사진으로 보는 우리들의 분과 활동입니다.	26

[별첨]

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0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38

자치회장 인사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주민자치회장 송지연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출발했던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주민자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도
주민과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생활 속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치매예방, 시니어 특화 교육, 이웃 나눔, 환경 및 탄소중립 실천 등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회째를 맞이한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내고, 결정하고, 실행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서
내년도 주민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 및 동(洞) 지역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13회째를 맞이한 매바위마을문화축제는
매바위라는 응암동 지명을 유래시키며, 우리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화합의 장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나눔과 봉사자로서,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웃을 알고, 친구를 알고, 마을과의 연인이 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응암2동 주민자치회 회장 송지연

1. 동(洞) 일반현황입니다.

◆ 지역특성

- 전체적으로 평지보다는 경사 지역이 많음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공동주택 증가
-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신규 입주민 증가



◆ 면적 : 0.80km²(區의 2.69%)

◆ 인구 : 10,996세대 27,160명(남 13,115명, 여 14,045명) / 2024. 12월 기준

◆ 주민조직 : 37동 240반

◆ 주요시설 (동/구)

(단위 : 개소)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공원	치안시설	종교시설
0 / 128	11 / 162	18 / 197	1 / 69	5 / 140	1 / 21	15 / 583

◆ 직능단체 현황

(단위 : 명)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45	15	17	37	14	9	18	21

◆ 동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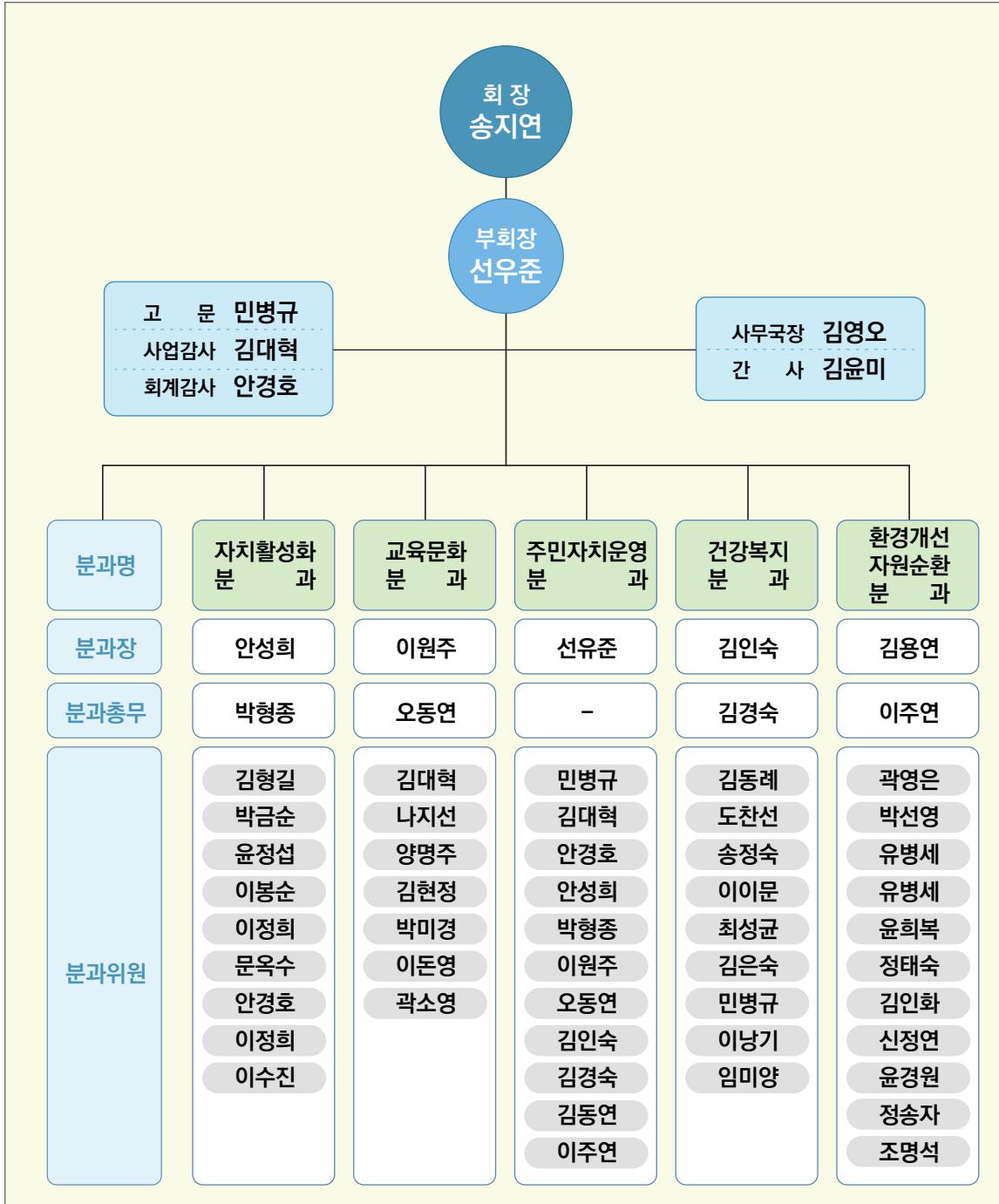


응암동은 마을 뒤 백련산 기슭에 있는 커다란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매가 앉아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매바위 웠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의 일행이 이곳에 나와 매를 날려 사냥을 하던 곳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응암동은 조선시대 한성부 북부 연은방 미흘산계에 응암동이라는 동명으로 포반동, 와산동과 함께 속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백련산 바위 위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장막을 치고 포수들이 기거했던 곳으로 '포수벌'이라고 불렸으며, 백련산 산줄기 끝자락의 모양새가 완만해 마치 산이 누워있는 것 같다 하여 화산 혹은 놀뫼라고 하며 와산동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외 냉정약수터의 이름을 따 '냉정골', 올무를 이용해 짐승 사냥을 많이 해 '올무지고개', 큰 매가 날아와 앉은 듯한 형상이라 하여 '매바위'라고도 했습니다. 매바위는 높이 4m, 둘레 25m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연립주택을 건축해 그 흔적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매년 10월 초에는 지역 번영과 주민 건강을 기원하는 매바위제를 백련산 정상 은평정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자치회 조직도입니다.



3.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 주민자치회 구성 : 44명

(단위 : 명)

계	개인·단체별		성 별		연령별				직능단체
	개인	단체	남	여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44	33	11	15	29	6	11	25	2	11

◆ 운영진 구성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및 분과 총무
송지연	선우준	김대혁 안경호	민병규	김영오	김윤미	안성희 박형종 이원주 오동연 김인숙 김경숙 김용연 이주연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분과명	분과장	총 무	인 원	주요사업 · 활동
자치활성화 분과	안성희	박형종	11명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마을 교육
교육문화 분과	이원주	오동연	9명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 및 문화 관련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운영 분과	선우준	-	12명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주요사업 추진 공유
건강복지 분과	김인숙	김경숙	11명	건강, 돌봄 및 이웃 간 관계회복
환경개선 자원순환 분과	김용연	이주연	12명	생태환경, 자원순환, 도로와 골목의 안전과 환경개선

4. 2024년 주민자치회 걸어온 길 입니다.

일정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주민자치회 회장 직무대리 선임(선우준 부회장 → 선우준 회장 직무대리)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실행• 제3기 주민자치위원 추가 위촉('24.2.20./11명)• 주민자치회 자체감사 실시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선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2025년 마을의제 발굴 및 동지역사업 선정 추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회장 선출('24.4.18./송지연 회장)•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2025년 마을의제 발굴 및 동지역사업 선정 준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구(區) 주민자치회 연합 워크숍('24.5.18.)•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2025년 마을의제발굴 및 주민공론장 운영('24.5.1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총회준비위원회 구성·운영(운영진 12명)•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2024.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평가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바위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송지연 등 9명)•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선발• 주민총회 상정 마을의제 심의·의결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동지역사업 선정 의제 사전투표• 제2기·제3기 연임교육 이수('24.8.1.~11.29.)•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회 주민총회 및 제13회 매바위 마을문화축제('24.9.7.)•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2025년 동지역사업 및 자치계획 결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모집계획 수립• 2024년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 2025년 동지역사업 세부추진계획 논의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주민자치회 예산 변경 심의·의결• 주민자치위원 제2기·제3기 연임대상자 확정(26명)• 응암2동 주민자치회 합동 워크숍('24.11.14.)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암2동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 제1기 위원 송별식, 송년행사(24.12.19)• 2024년 주요업무평가 및 2025년 동지역사업 실행 협의• 주민자치회 사업 및 예산 마감, 운영세칙 개정 심의·의결

5. 주민자치회 회의는 이렇게 합니다.

연번	구 분	일 정	대 상	주요내용								
1	주민총회	하반기	지역주민/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보고 및 승인 · 자치계획 보고 및 승인 · 참여예산 및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 분과별 마을계획 수립 및 승인 								
2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위원 전원/ 분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및 평가(결산) · 주민자치회 안건 심의·의결 · 위원·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자치회 중요사항 								
3	운영진 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회장, 감사 분과장/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대한 조정 · 정기회의에 부의할 안건 결정 · 민관 협력 방안, 분과간 공유 및 협력 · 기타 주민자치회 토의사항 								
4	분 과 회 의	<table border="1"> <tr> <td>자치활성화 분과</td> <td>매월 첫째 주 목요일</td> </tr> <tr> <td>교육문화 분과</td> <td>매월 둘째 주 월요일</td> </tr> <tr> <td>건강복지 분과</td> <td>매월 둘째 주 화요일</td> </tr> <tr> <td>환경개선 자원순환 분과</td> <td>매월 첫째 주 화요일</td> </tr> </table>	자치활성화 분과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교육문화 분과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건강복지 분과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환경개선 자원순환 분과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분과위원/ 분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운영진 회의에 부의할 안건 결정 · 분과 운영 및 사업 실행 · 기타 분과별 고유사항
자치활성화 분과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교육문화 분과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건강복지 분과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환경개선 자원순환 분과	매월 첫째 주 화요일											
5	외부(별도) 회의			<p>구 자치회장 연합 회의 : 매월 둘째주 금요일</p> <p>구 사무국 회의(주민참여협치과) : 매월 말</p> <p>민관협력 회의 : 매월 수시(회장·사무국/동장·동 관계자 등)</p>								

6. 2024년도 예산 및 사업 총괄표입니다.

1_주민자치회 예산

(단위 : 천원)

계	자치구 보조금	
	운영 · 사업비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16,600	4,250	12,350

2_동지역사업(주민참여예산)

연번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비고
계			100,000	
1	찾아가는 치매 예방 활동가 양성 및 지역활동	치매 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매예방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10,000	자치활성화 분과
2	시니어 청춘학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어르신 배움터 운영	10,000	교육문화 분과
3	찾아가는 리필 스테이션	친환경 실천의 가정에서 용기 재활용을 통한 리필숍 운영	4,000	자치활성화 분과
4	도전! 응암2동 탄소중립가족 골든벨	가족(부모, 자녀)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및 골든벨 시행	8,000	환경개선 자원순환분과
5	매바위 숲속 지킴이	백련산 생태와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8,000	환경개선 자원순환분과
6	찾아가는 대학, 맞이하는 응암2동 “인생수업 다있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운영	10,000	자치활성화 분과
7	매바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매바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10,000	자치활성화 분과
8	사랑의 반찬 꾸러미 전달	취약계층의 반찬꾸러미를 지원을 통한 나눔문화 조성	10,000	건강복지 분과
9	응암2동 아기탄생 기념 나무 심기	아기 탄생 나무를 심어 탄생 기념 및 나무(숲) 함께 하기	28,000	은평구 (공원녹지과)
10	안전한 보행길	통행로가 없는 위험하고 불편한 지역의 사잇길 설치	2,000	은평구 (공원녹지과)

2024년 응암2동, 동(洞) 지역사업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찾아가는 치매예방 활동가 양성 및 지역활동(참여예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매예방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 이수한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매예방 봉사활동을 함.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3.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주민, 치매예방활동참여 희망자
- ▶ 사업내용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치매예방활동가를 모집·구성 후 대한치매예방협회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들이 지역 경로당 등 정기방문을 실시하여 봉사함.
- ▶ 예산액 10,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시니어 청춘학교

100세 시대에 맞춤 교육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어르신들에게 배움터를 제공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3.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내 어르신 누구나
- ▶ 사업내용 입학식, 수료식, 소풍,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웃음치료,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터 운영
- ▶ 예산액 10,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찰✓ 잘했습니다.

찾아가는 리필 스테이션

1회용품이 넘쳐나고 있는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개인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7.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주민, 환경보호 단체 등
- ▶ 사업내용 은평구 햇빛상점과 연계하여 응암2동 주민총회 및 마을문화축제 등에 리필숍 운영 등 환경실천 운동 전개
- ▶ 예 산 액 4,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도전! 응암2동 탄소중립 가족 골든벨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등의 이해를 도모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3.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주민, 학생, 어린이 등
- ▶ 사업내용 가족 구성원(부모+자녀)이 함께 쉽고 흥미로운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받고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골든벨 운영
- ▶ 예산액 8,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매바위 숲속 지킴이

백련산 생태와 환경 교육을 통해 백련산을 더 잘 알고, 보호하고
환경보호 활동으로 기후대응 및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3.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주민, 환경보호 단체 등
- ▶ 사업내용 응암2동 가족들과 함께 백련산의 생태와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진행
- ▶ 예 산 액 8,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찾아가는 대학, 맞이하는 응암2동 “인생수업 다있소”

1동 1대학의 은평대학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과 함께 연계하여
평생학습을 운영하여 질 좋은 교육을 주민들에게 제공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3.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주민
- ▶ 사업내용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질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 ▶ 예산액 10,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매바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응암2동 주민의 유일한 공공 도서관인 매바위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3.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지역주민
- ▶ 사업내용 매바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예산액 10,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사랑의 반찬 꾸러미 전달

신 응암시장 내 상인들에게 구매한 반찬 꾸러미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을 조금이나마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함.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5. ~ 12.
- ▶ 사업대상 응암2동 취약계층
- ▶ 사업내용 신 응암시장 내 상인들에게 구매한 반찬 꾸러미와 분과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 전달
- ▶ 예 산 액 10,000천원



7. 주민자치회 사업 잘했습니다.

응암2동 아기탄생 기념정원

남녀노소 누구나, 다채로운 사계절 매력정원 만들기!
은평 '세대별 시그니처 정원' 조성 추진 계획에 의거 실시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4. 23.(화)
- ▶ 사업대상 은평구 거주 신생아(유아) 가족 등(응암2동 주민 우선 선정)
- ▶ 사업장소 백련근린공원 일대 (응암동 산769-6)
- ▶ 사업내용 식전공연, 체험프로그램, 나무심기(정원조성) 등



8. (은평구)2024년 주민자치회 연합 워크숍 - 정말 좋았습니다.

◆ 일자 : 2024. 5. 17.(금)

◆ 장소 : 서오릉 고개 녹지연결로 숲속무대(갈현동 산 131-22)

◆ 참석 : 200여명(주민자치회 위원 및 가족, 은평구민)

◆ 진행

시간			내용
1부	10:00~10:05	5'	집결(편백나무숲, 구파발역) 및 출발
	10:05~12:00	115'	우수사례 탐방 및 환경정비
2부	12:00~12:20	20'	내빈소개 및 인사말
	12:20~12:30	10'	시산제 ※은주회
	12:30~14:00	90'	점심식사
	14:00~14:20	20'	폐회 및 정리



9. (응암2동) 2024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 일자 : 2024. 11. 14.(목)

◆ 장소 : 경기도 파주시·양주군 일원

◆ 참석 : 50여명(주민자치위원 45, 동행정 직원 등)

◆ 진행

시간	내용	비고
09:00 ~ 09:30	응암2동 주민센터 → 은평한문화박물관 이동	
09:30 ~ 10:00	은평한문화박물관/한옥마을 탐방	
10:00 ~ 10:30	은평한문화박물관 → 마장 저수지 이동	마장저수지 (파주시 광탄면 소재)
10:30 ~ 11:00	마장 저수지 돌아보기, 출렁다리 걷기	초원의 집 (양주군 장흥면 소재)
11:00 ~ 11:30	마장 저수지 → 초원의 집 이동	
11:30 ~ 12:30	중식	
12:30 ~ 14:00	특강 (내일을 위한 소통)	전문 강사
14:00 ~ 16:30	워크숍 주 행사 프로그램 (‘24 성과·’25 비전 공유/자치회 활동 공유)	
16:00 ~ 17:20	석식/ 격려, 간담회, 자연 체험	
17:20~17:30	폐회 및 정회	



10. (은평구) 2024년 주민자치회 합동 성과공유회 - 우리 함께 했습니다.

**2024
은평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Program

2024. 12. 13. (금) 16:00 은평구청 5층 은평홀

시 간	내 용	비 고
15:50-16:00	식전공연 신내동 주민 학창단('날아올라') 학창	꽃밭에서[이봉조] 눈[김효근]
16:00-16:15	내빈소개 및 축사	주요내빈
16:15-16:20	감사패 전달	시범동 5개동 (불현2동, 갈현1동, 갈현2동, 음현2동, 역촌동)
16:20-16:25	적십자회비 전달식	주민자치협의회
16:25-16:35	주민자치회 영상 시청 부제 : 2024. 은평구 주민자치회 우리의 이야기	
16:35-17:05	성과공유회 16개 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소개, 은평구 미래 그려보기	곽민철 강사
17:05-17:25	우수 프로그램 맛보기 천선우 강사와 함께하는 '시니어인지힐링리크'	천선우 강사
17:25-17:30	폐회 현정 영상 시청	

주관 은평구 주민자치회
주최 은평구청, 은평구 주민자치회



11. 2024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제1기 위원 송별식, 송년행사 -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2024 . 12. 19 (목) 18 : 00

◆ 제1부 : 정기회의/성과공유회

구 분	식 순	비고
1	회의 안내	사무국장
2	국민의례	다 같 이
3	주민자치위원 유공자 구청장 표창장 전달	동 장
4	송년사(인사말씀)	회 장
5	동장 인사말씀, 구정(동) 안내	동 장
6	성원 보고	사무국장
7	개회 선언	회 장
8	안건심의 및 토론/성과보고회	참 석 자
9	폐회선언	회 장

◆ 2부 : 제1기 주민자치위원 송별식

구 분	식 순	비고
1	2024년 주민자치의 이모저모	사진, 동영상
2	감사장, 꽃다발 전달	송지연 회장
3	고문 인사말씀	민병규 회장
4	부회장 인사말씀	선우준 부회장
5	나눔의 송별 인사	제1기 위원 전원
6	또 다른 떠나시는 분 인사(꽃다발 전달)	김용연 분과장 외
7	감사의 답례 인사	희망자, 분과별
8	축하공연(바이올린 등), 합창(만남)	초청자, 참석자
9	맺 은 말	동장, 송지연 회장
10	기념촬영	다 같 이

◆ (별도 순서) 따뜻한 겨울나기 주민자치회 성금 전달 (회장, 동장)

◆ 3부 : 송년회, 석식, 화합의 시간 등

11. 2024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제1기 위원 송별식, 송년행사 -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2. 자치회관 프로그램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예

- * 정 원 : 15명
- * 시 간 : 매주 월요일 3층 강좌실 10:00 ~ 12:00
- * 수강료 : 3개월 30,000원



◆ 라인댄스

- * 정 원 : 20명
- * 시 간 : 매주 월, 수요일 4층 다목적실 10:00 ~ 12:00
- * 수강료 : 3개월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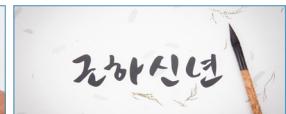
◆ 한국무용

- * 정 원 : 15명
- * 시 간 : 매주 화, 금요일 4층 다목적실 14:00 ~ 15:30
- * 수강료 : 3개월 45,000원



◆ 캘리그라피

- * 정 원 : 15명
- * 시 간 : 매주 화요일 3층 강좌실 09:00 ~ 11:00, 수요일 3층 강좌실 15:00 ~ 17:00
- * 수강료 : 3개월 45,000원



◆ 요가

- * 정 원 : 20명
- * 시 간 : 매주 월, 목요일 4층 다목적실 15:00 ~ 16:30
- * 수강료 : 3개월 45,000원



◆ 미술(중급)

- * 정 원 : 15명
- * 시 간 : 매주 월요일 4층 다목적실 09:00 ~ 12:00
- * 수강료 : 3개월 45,000원



◆ 미술(기초)

- * 정 원 : 15명
- * 시 간 : 매주 목요일 4층 다목적실 12:30 ~ 14:30
- * 수강료 : 3개월 30,000원



13. 제6회 주민총회 - 최고의 주민 참여마당이었습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투표방법 및 기간

① 온라인 투표 : 2024. 8. 19. – 8. 31.(13일)

② 사전 투표 : 2024. 8. 19. – 8. 31.(13일) / 洞(동) 주민센터 외

③ 총회 현장 투표 : 2024. 9. 7. / 매바위 어린이공원

◎ 대상 : 응암2동 주민(투표 자격: 만14세 이상 주민, 생활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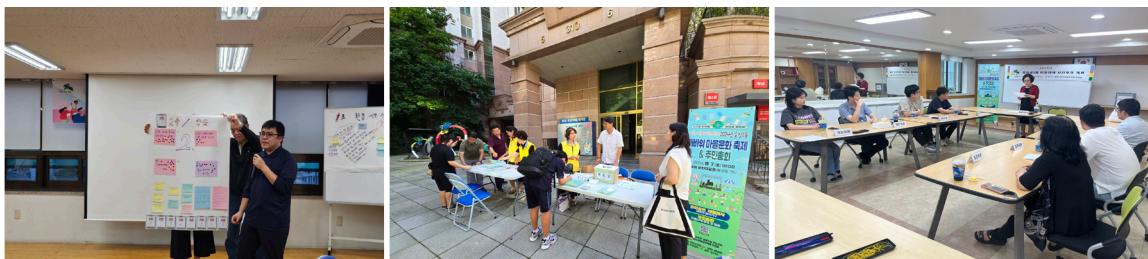
◎ 참여 인원 : 1,283명(온라인 투표 22, 사전 투표 1079, 현장 투표 182) / 유효 1210, 무효 73)

◎ 내용 : 주민자치회 운영 보고, 마을의제(동지역사업) 선정 투·개표, 자치계획 승인 등

2. 주민총회 개표 결과(유효표)

구분	사업명	온라인 투표	사전 투표	현장 투표	계	비고
프로그램 분야 (2,000만 원)	볼거리가 있어 재미있는 매바위 작은 도서관	16	676	119	811	1위
	사랑의 마을 인문학 교실 운영	19	657	103	779	2위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활동가 양성 및 지역 활동	15	614	97	726	3위
	매바위 마을 오케스트라 운영	12	513	85	610	4위
	도전! 시니어 모델로 다시 태어납니다.	4	401	49	454	5위
환경·동특화 분야 (3,000만 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응암2동 플리마켓	19	770	120	909	1위
	친환경 녹색마을, 응암2동	19	753	131	903	2위
	청소년·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20	748	124	892	3위
	한 눈에 보는 응암2동 마을 안내서 제작	8	503	57	568	4위
시설 분야 (2,000만 원)	방범 사각지대 안전공간 조성	19	911	163	1,093	승인
	백련아름어린이공원 놀이터 내 그늘막 설치	9	916	152	1,077	승인
	백련산에 쉼의자, 휠링의자 등 편의 시설 설치	16	900	146	1,062	승인
	매바위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1	712	73	786	승인

13. 제6회 주민총회 - 최고의 주민 참여마당이었습니다.



14. 제13회 매바위마을문화축제 - 주민 화합의 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 일자 : 2024. 9. 7.(토) 10:00

◆ 장소 : 매바위 어린이공원

◆ 참여 : 지역주민 등 400여명

◆ 주요내용 : 기념식, 문화공연, 체험부스 및 흥보부스, 먹거리 장터 운영

◆ 주관 : 제13회 매바위 마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15. 만남, 나눔의 시간 -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16. 사진으로 보는 우리들의 분과 활동입니다.

◆ 건강복지분과



◆ 교육문화분과



◆ 자치활성화분과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한해의 발자취를 뒤안길로 하며...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한해가 갑니다. 좋은 만남이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그리는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발전을,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손모아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기약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난 너를 좋아해!
난 응암2동 주민자치회를 좋아해!

[별첨]



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개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 ·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 ·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 관리 ·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 관리 · 지출 등을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2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실행, 성과공유의 과정까지 동 주민자치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2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응암2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및 전 응암2동 자치회장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응암2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응암2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 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행정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 한한다.)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하되,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 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연 3회) 및 분과회의(연 6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시 연간 2회는 예외로 인정한다.
 3.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인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분과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주민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고성·욕설 사용 등으로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특정 위원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되,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간사와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공개모집 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2. 분과별 위원장(또는 총무) 각 1명

제11조(임원·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위원장이 된다.

제12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4.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임원·운영진의 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기 및 수시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사업 추진 내역
 2. 주민자치회 수입, 예산 지출 내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내역 전반
- ③ 제2항 2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의 대상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과 수익금·찬조금 집행 등에 한하며,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시감사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 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운영진·사무국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운영진·사무국은 세칙 제23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 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회의 또는 정기회의에 연 3회 불참할 경우(단,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행위를 범하였을 때

4.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 또는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 또는 임무 태만 등의 민원발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임) ① 임원·운영진·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이 사임을 승인한 경우 사임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 한다.
2.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둔다. 단, 후보등록 공고에 3회 이상 지원자가 없을 시에, 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②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궐위로 인해 후임자로 선출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④ 회장과 부회장 모두 궐위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업무 대행 수행자를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여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⑥ 사무국장·간사는 세칙 제19조, 제20조를 따른다.

⑦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구 또는 응암2동에서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2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은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은평구 주민자치회 사무국 매뉴얼 업무 범위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응암2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업무상황을 종합하여 상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는 공개모집의 선정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출하고 남은 활동기간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 제2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한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록 작성, 예산회계 출납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 정기·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 자치회장은 간사를 새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남은 활동기간 동안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과 사무국장·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한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분과총무를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의 각종 활동 및 분과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총무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⑧ 분과원은 분과활동을 신청한 응암2동 주민으로서 3개월 이상 분과활동을 한 주민을 의미하며, 분과회의 참석시 의결권은 있다. 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⑨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가입 시 가입신청서를, 탈퇴 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분과회의, 사업 활동 등에 연 5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⑩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⑪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응암2동 전체 주민자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⑫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실행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운영회의
 4. 분과회의
 5. 사무국회의
 6. 민관협력회의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 제1항의 2호 3호 6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 3.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 4. 주민자치회 사업·결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
 - 5.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해임
 -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8.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9.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 유고 시, 분과부위원장(분과총무)이 출석할 수 있다.
-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 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 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 차년도 사업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3세 이상의 주민(응암2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 설명회,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⑦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⑨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⑪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제30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예산
3.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4.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제32조(재정)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산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사용 목적으로 예산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이 관리되며,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제32조(재정)에 규정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주민자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한다. 분과 사업일 경우 분과위원장의 결재도 받을 수 있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사무국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의 인계) ① 임원, 자치위원 및 사무국장, 간사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추진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 인수인계 시점은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직인)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4.12.19.)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분과회의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정기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기타)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024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결과보고서

통 권 제06호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응암2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송지연

편집인 송지연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100 (응암동, 응암제2동 주민센터)

연락처 (02) 389~9599